

03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

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1. 재산세 분할납부

□ 재산세(지방세법 제118조)

- (포함세목)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, 이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(지방세법기본통칙 118-1 1②)는 분납범위에 포함되며,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
- (분납기준 및 방법)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,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,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.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함
- (효과) 재산세를 분할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,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게 되며, 따라서 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음

□ 자동차세(지방세법 제128조)

-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(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)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. 다만, 납세의무자가



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(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)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,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음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

- 지방소득세(지법 제93조 제7항 후단 및 제95조 제4항 신설)
 - (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)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
 - (분납기준 및 방법)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,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.
 - ※ 2023. 3. 14. 종합소득·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함.

2. 지방세 물납(지방세법 제117조)

- 물납세목
 - 지방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함.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,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함
- 물납기준 및 방법
 -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됨
- 물납절차
 -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

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
-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

□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

-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함.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,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됨. 다만,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·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것도 시가로 봄

1. 해당 부동산의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: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
2.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(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함)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: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
3.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: 그 취득가격

-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

□ 물납의 효과

-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